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안내

특허청 등록과 2015.11.27. 기준

1 연차등록 신청·상표권갱신등록 신청 및 납부안내서 서비스

+ 연차등록 신청

① 특허, 실용신안(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함(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 존속가능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내에서 최초설정등록(3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임

② 신청방법

구분	내용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특허·등록료)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서식번호 제25호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특허·등록료)"를 다운로드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서 납부서 없이 납부 가능
납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서식번호 제25호)를 출력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생)와 함께 우편발송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연차등록료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연차등록료 납부
납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단, 1997.7.1.이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등록료를 미리 납부함(특허법 제79조) ■ 추가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음.(특허법 제8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납부 가산금액 (1개월 이내에 3%, 2개월 이내에 6%, 3개월 이내에 9%, 4개월 이내에 12%, 5개월 이내에 15%, 6개월 이내에 18%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소멸된 권리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로 추가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추가납부기간 중의 실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특허법 제81조의3)

+ 상표권갱신등록 신청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신청에 의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록 절차를 의미함(상표법 제42조, 상표법 제43조)

※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권의 갱신 제도 변경 (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 →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 상표권 2회 분할 납부제도 도입 : 1회차 5년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권 등록료 2회차 분할 납부해야 함(상표법제34조)

② 신청방법

구분	내용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서식번호 제23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특허·등록료"를 다운로드 ■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 납부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서식번호 제25호 "납부서(구분항목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를 다운로드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납부자번호 부여→다음날까지 등록료 납부 ■ 서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제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생)와 함께 우편 발송 - 방문제출: 신청서를 민원실(서울사무소 포함)에 제출→납부자번호 부여→다음날까지 등록료를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
납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만료기간 이내에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갱신정상기간) ■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갱신추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만료 경과후에도 6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가산금액 :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
등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정상납부 기간 :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 (※ 단, 2회 분할 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가납부 기간 :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 (※ 단, 2회 분할 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21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하는 지방세 9,120원 (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 부과대상 : 상표권 설정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시 <p>☞ 2012.4.1.이후 출원하여 설정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4.1.이후 존속기간갱신 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원측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가산</p>

+ 납부 안내서 서비스 제공

① 등록권리자가 연차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② 서비스 대상 및 유형

권리별	통지대상	통지시기	통지수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 등록료 납부안내서	정상납부 만료 3월전 (정상납부 초과분은 정상납부 기간만료후 즉시 2차 통지)	봉함엽서, 무음우편발송 이메일, 전화, 문자
상표	소멸권리 회복안내서	추가납부 만료 1월 후	봉함엽서
	상표권 갱신등록신청 안내서	존속기간 만료 3월전 (존속기간 만료후 2차 통지)	봉함엽서, 무음우편발송 이메일, 전화, 문자

※권리자께서 본 안내서를 정확히 받으시려면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지(또는 전자메일)이 바뀌었을 때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한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와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신청서(별지 제5호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이전 등록 신청

①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특허법 제101조, 상표법 제56조)

② 권리이전 등록신청 유형 및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 신청구분 :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원인	구비서류(각 1부)
양도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발행일 6월 이내)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⑤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⑤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⑤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⑥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법인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④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법인분할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⑤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⑥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②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③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 ※권리이전시 등록증 교부는 등록증재교부 신청시에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질권 설정등록 신청

+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② 실시(사용)권 유형 및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 신청구분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등록원인	구비서류(각 1부)
설정계약	① 설정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발행일 6월 이내)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⑤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 질권 설정등록

① 질권이란 특허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함

② 질권(근질권) 유형 및 구비서류

- 질권(근질권) 설정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 신청구분 : 질권, 근질권

등록원인	구비서류(각 1부)
설정계약	① 질권(근질권) 설정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발행일 6월 이내)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⑤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4 말소등록 신청

①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으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특허권 등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소멸)된 경우로 특허권의 포기 등이 말소등록에 해당됨(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제48조)

② 말소등록 신청유형

신청사항	신청 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한다.
지분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약 말소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③ 구비서류(각 1부)

- 말소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포기서 등
-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 위임장(변리사 대리인의 경우)

5 기타 참고사항

+ 제 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함.

등록신청의 유형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권자	통상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특허권	이전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전용실시권 설정	동의서				
	통상실시권 설정	동의서				
	포기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전용실시권	이전	동의서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동의서			
	통상실시권 설정	동의서	동의서			
	포기				동의서	동의서
통상실시권	이전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포기					동의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기타 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등록증 정정교부·재교부

- 설정등록후 교부한 특허증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양도 등으로 특허권자가 바뀐 경우 등에는 새로운 특허증(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
 - (구비서류)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신청서, 위임장(변리사 대리인 경우) 각 1부
- 외국어특허증(등록증)의 교부신청(특시칙§50④)
 - (발급언어) 영어, 일어, 독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총8개 언어의 외국어 특허증 발급
 - (구비서류) 별지제29조의2 서식의 교부신청서, 번역한 공증서, 위임장(변리사 대리인 경우) 각 1부

+ 변리사가 아닌 자의 대리행위 금지

-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 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 등록신청 절차 관련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